

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(결정)서				처리기간
				5일
청구인	상 호		수출입허가번호	
	대표자 성명		사업자등록번호	
	사업장소재지	(전화:)		
청구내용	반 환 사 유			
	반환청구금액			
「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 년 월 일 청구인 (서명 또는 인) 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				
반환결정금액				
반환청구금액과 달리 결정된 경우 그 내용				
「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의 반환을 결정합니다. 년 월 일 유역(지방)환경청장 직인				
※ 첨부서류 1. 폐기물의 수출이동서류 또는 수입이동서류 2. 폐기물의 수출허가수수료 또는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※ 작성요령: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				수수료
				없 음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쪽)

